

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및 법 개정 방향(안)

2026. 5. 26(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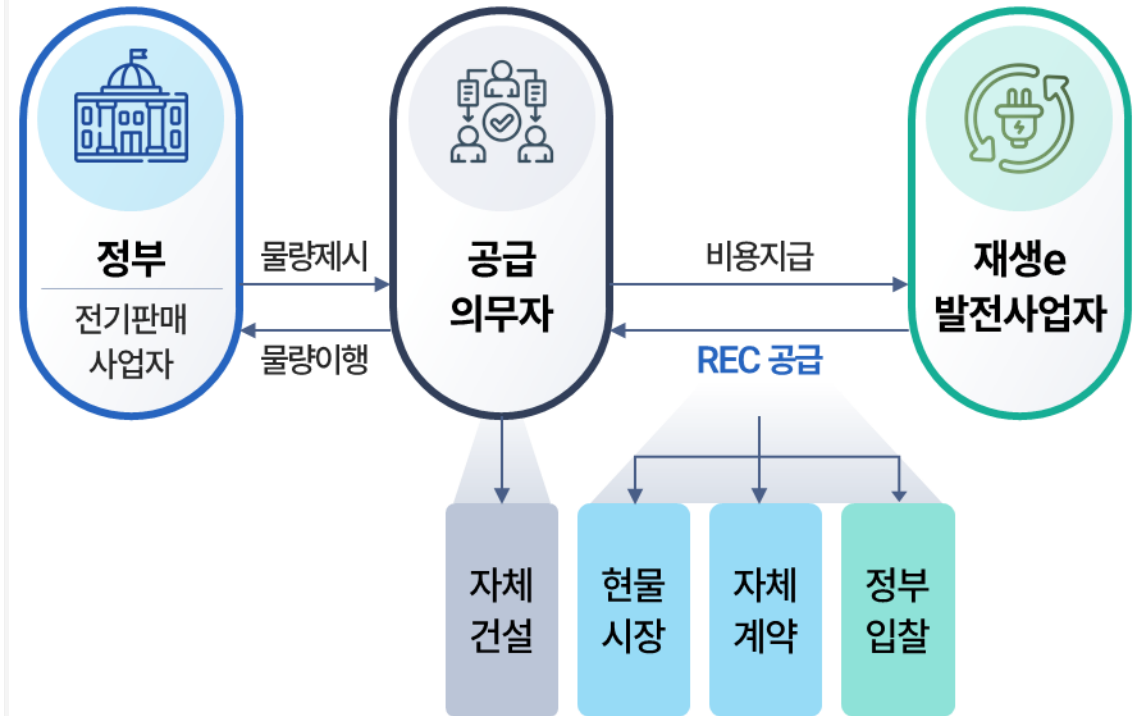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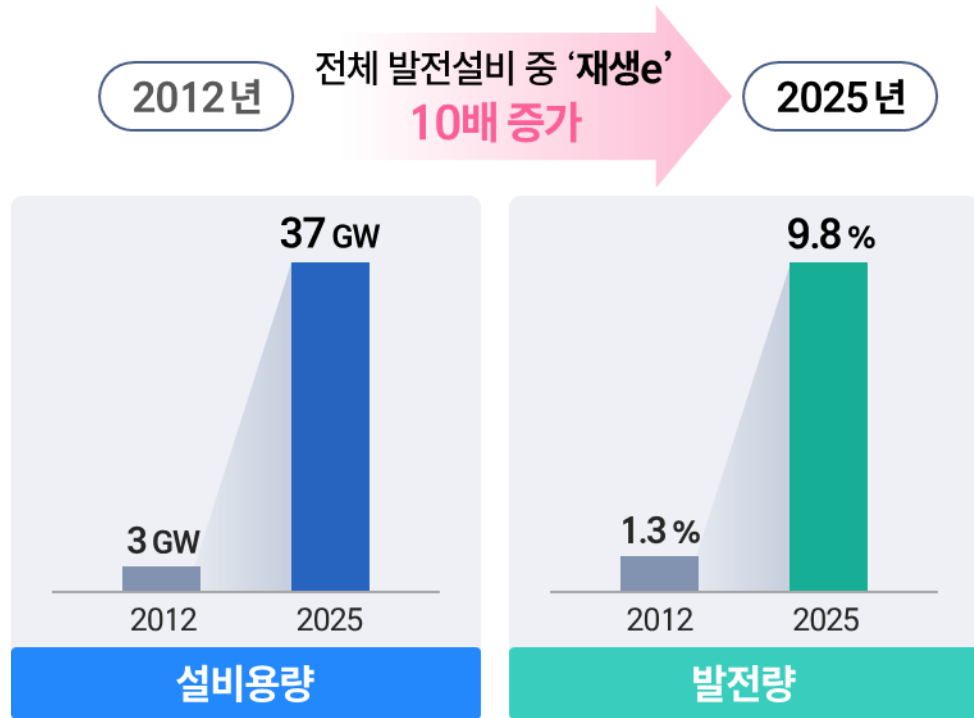
Contents

- I. 보급제도 개편 필요성
- II. 보급제도 개편 세부방향(안)
- III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- IV. 향후 계획



1. 보급제도 개편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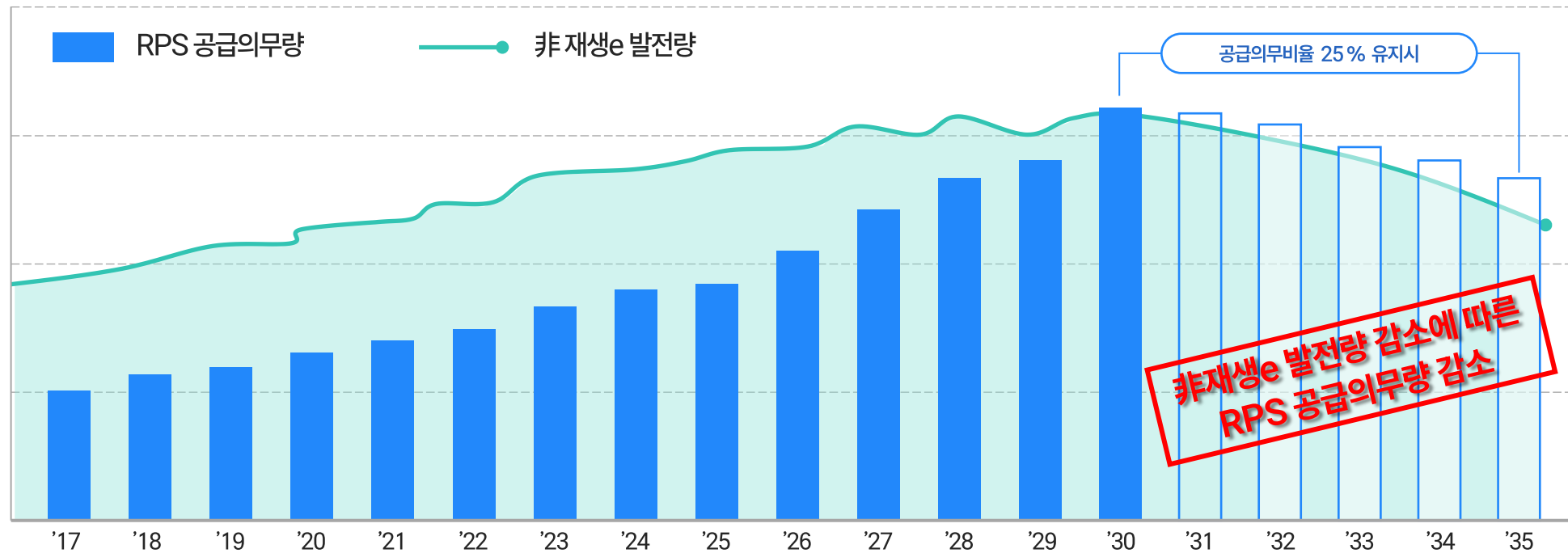
FIT 폐지 이후 RPS 제도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초기 보급 확대에 기여



그러나, RPS제도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에 구조적 어려움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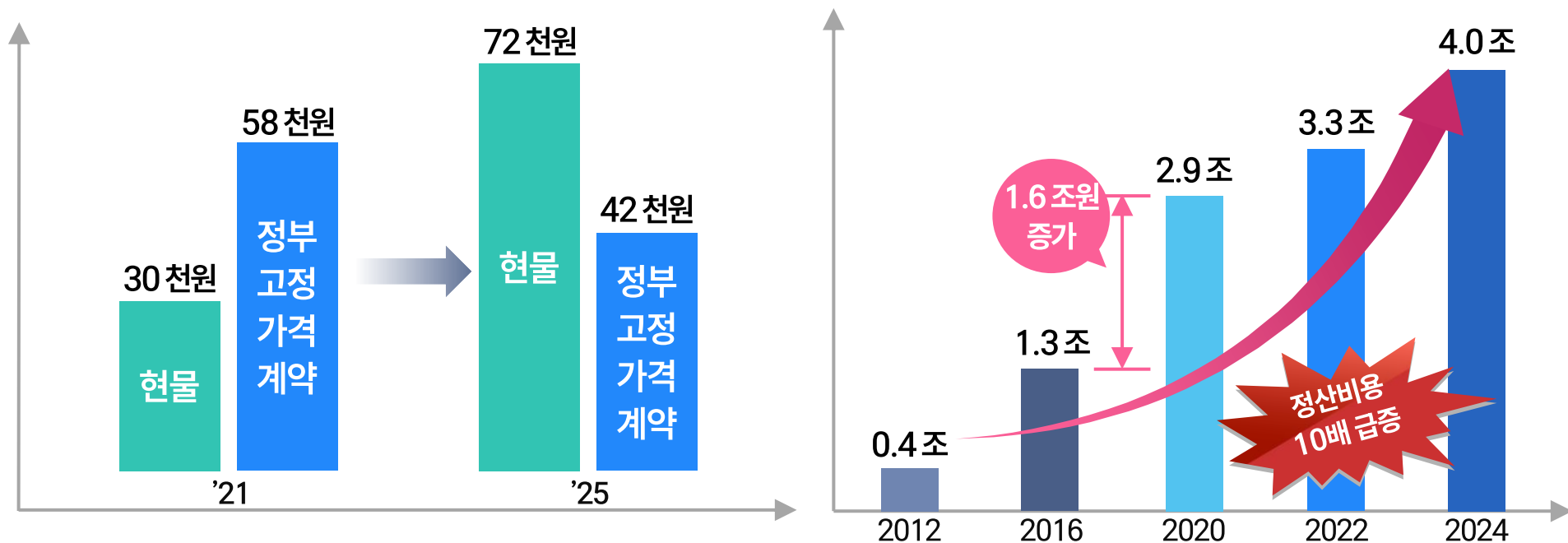
1. 보급제도 개편 필요성

- ▶ (한계1) 발전량 대비 공급의무량은 일정 수준 도달 후 확대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
- ▶ (한계2) 공급의무자는 재생e 설비 자체 건설보다 REC 구매 선호 등 공공성 약화



1. 보급제도 개편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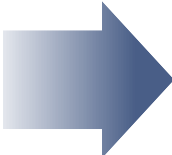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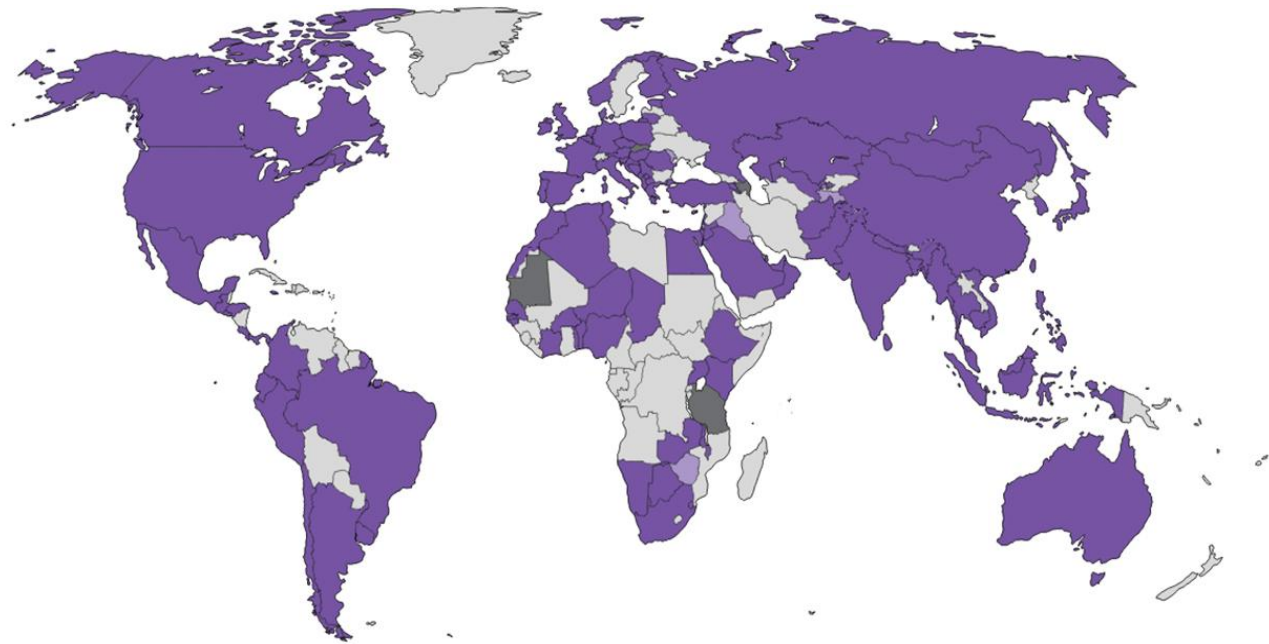
- ▶ (한계3) 민간시장은 소규모 편중, 원별 균형적인 보급과 비용 하락에 한계 존재
- ▶ (한계4) 현물시장 비율 증가에 따라 RPS 이행비용 정산금 증가



2030년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용량 의무 부과, 계약시장제도(입찰) 일원화로 보급 변화 필요

1. 보급제도 개편 필요성

(해외동향) 영국, 독일, 일본 등 주요국가는 RPS 등 기존 보급 체계에서 계약시장제도(입찰)로 전환하여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도모



구 분	2012	2016	2020	2021
RPS	23	33	34	35
FIT/FIP	71	83	83	92
입찰제도	45	73	116	131
미도입	50	34	56	43
통계부재	55	46	0	0
전체	196	196	196	196

* Renewable Global Status Report(REN21 등)

- Have held auctions or tenders
- First auction or tender announced
- Auction or tender policy in place, no rounds held
- Have not held auctions or tenders, or no data

* Source: BloombergNEF. Note: GW is gigawatts. Mapped data are for distinct economies.

Conten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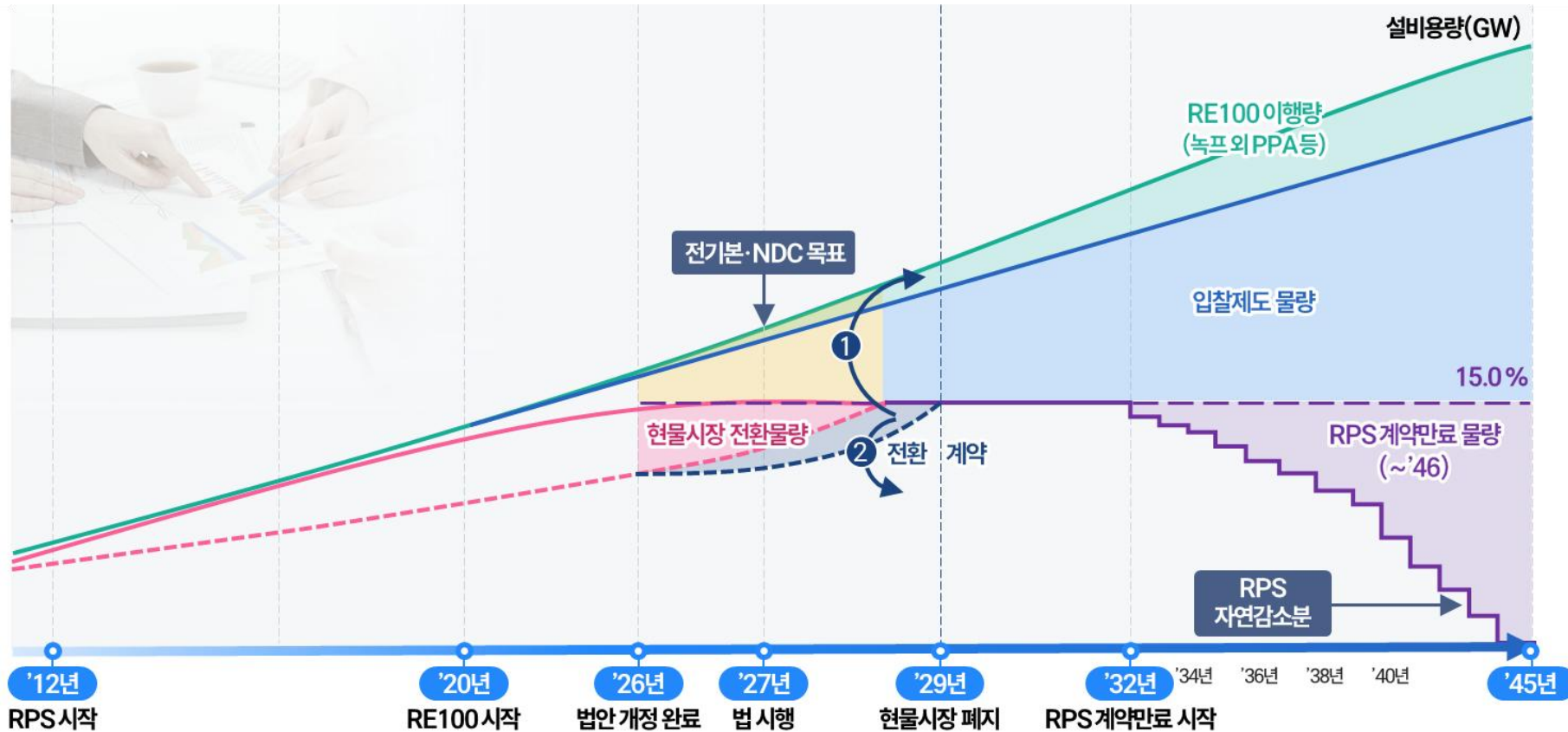
- I. 보급제도 개편 필요성
- II. 보급제도 개편 세부방향(안)
- III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- IV. 향후 계획



2. 보급제도 개편 세부방향(안)

용량 단위 계약시장제도(입찰) 일원화 : 2030년 100GW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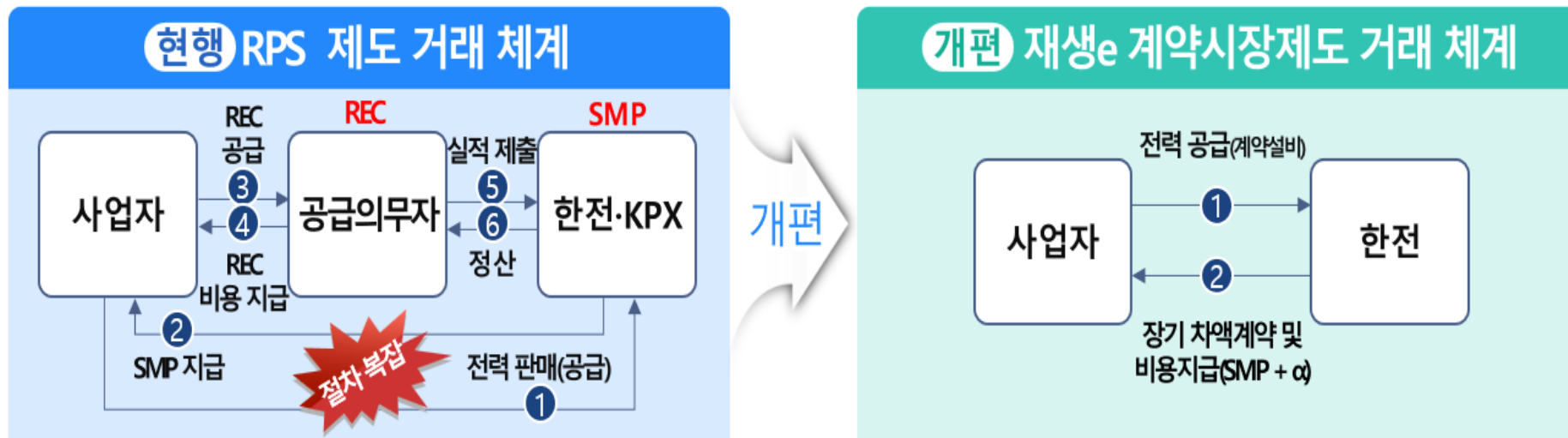
- ▶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모두 정부 주도 계약시장제도(입찰)로만 진입 가능
- ▶ 입찰 용량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보급 목표에 맞춰 핵심 에너지원별 공고 추진



2. 보급제도 개편 세부방향(안)

계약시장제도(입찰) 운영 :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비용 하락과 산업 육성

- ▶ 재생에너지 원별 구분, 유효 경쟁률을 확보하여 매년 상한가와 용량 공고
- ▶ 입찰은 가격 평가, 사업계획서 평가로 국내 산업, 공급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
- ▶ 낙찰 사업자는 한전과 직접 장기간 계약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, 금융권 PF 금리 하락 유도



2. 보급제도 개편 세부방향(안)

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계약시장제도(입찰) 참여 지원

- ▶ 소규모는 별도 입찰 계약시장을 마련하고, 별도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설계



2. 보급제도 개편 세부방향(안)

▶ RESCO 연계로 대규모 사업자 대비 전문성·경쟁력 확보 지원



2. 보급제도 개편 세부방향(안)

설비용량 단위 의무 부과 : 직접·지분투자만 인정, 공공성 강화

- ▶ 국가 보급 목표에 따라 계약시장제도(입찰) 운영시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성장 유도
- ▶ 보급 의무자 및 목표관리대상자를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의무·목표 부여하여 보급 확대 기여
 - ⋮ 보급 의무자는 공공 발전사 8개, 목표관리대상자는 민간 발전사 21개 지정 검토
- ▶ 보급 의무 및 목표 이행은 직접·지분 투자를 통해 재생e 보급하는 경우 실적 인정
 - ⋮ 목표 미달 예상시 보완·제한적 범위에서 대체 이행 인정(그럼에도 목표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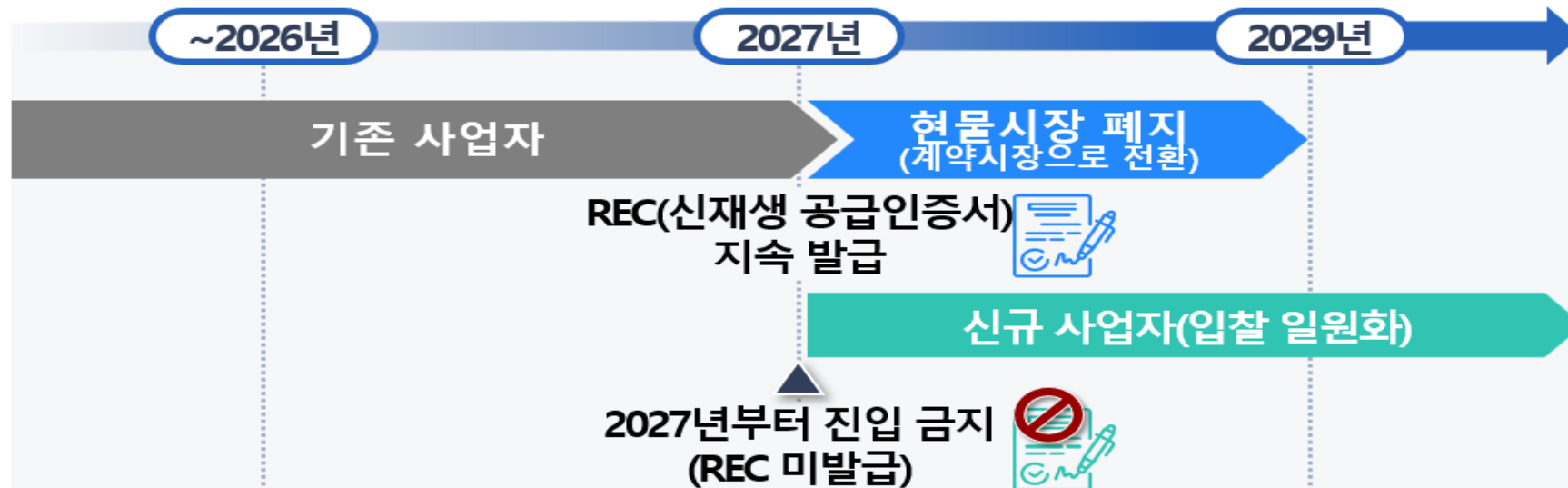
다만, 제도 개편 초기 사업 개발시간 등 감안 3~5년 실적 점검 등 유연성 부여 검토

2. 보급제도 개편 세부방향(안)

RPS 제도 일몰: REC 및 현물시장은 폐지하고, 질서있는 전환 등 유도

- ▶ 신규 REC 발급은 2026년말 폐지되나, 기존 사업자 대상으로 지속 발급 추진
- ▶ 現 RPS 공급의무자는 2026년 의무량 고정하여 기존 설비와 REC 계약 지속 이행
- ▶ 다만, 현물시장은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별도 전환시장을 마련하여 전환 후 폐지

* ①PPA 체결을 우선 지원, ②PPA 미전환 물량은 적정 단가를 제시하여 고정가격계약 전환



Contents

- I. 보급제도 개편 필요성
- II. 보급제도 개편 세부방향(안)
- III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- IV. 향후 계획



3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
계약시장제도(입찰) 및 의무·목표관리 등 도입 → RPS 공급의무의 한계 개선

계약시장제도 제도 및 구매계약 법 제12조의 14 신설

현
행

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e 공급의무량(발전량)으로 공급의무자에 할당,
공급의무자는 자체건설 혹은 외부 구매(REC)로 공급 의무 이행

개정안

전기본 전망에서 RE100(PPA) 등 고려하여 입찰용량(설비용량) 산정,
구매계약자*는 낙찰된 발전설비의 생산전력 구매계약 체결

❖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(한국전력공사)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

3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
소규모 설비 보호

법 제12조의 14 제3항 신설

현
행

소규모 설비에 대한 별도 지원 등 법률상 근거 없음
(法) 규모별 개별비용 등 고려 가중치 산정, (RPS고시) 한국형 FIT 일몰(2023.7)

개정안

계약시장제도(입찰) 내 소규모 별도 경로 신설 근거 마련

※ (부령 위임) 일정규모 이하의 설비 기준

계약시장제도(입찰) 내 행정서비스 지원 등 RESCO의 소규모 사업자 업무 대행
위한 근거 마련 ※ (부령 위임) RESCO 등록을 위한 요건, 대행 가능한 사업영역 등

3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
보급의무·목표관리

법 제12조의 15, 16 신설

현
행

공급의무자가 외부조달 포함하여 모든 재생e 공급 부담(未이행시 과징금)

개정안

석탄화력 전환 등 공공성 강화 고려하여 발전 공기업 등에 대해
보급 의무자 지정 및 보급 의무량 할당(未이행시 과징금 부과 가능)

일정규모 이상 민간 발전 사업자 등을 목표관리 대상자로,
지정하고, 이행 관리(未이행시 기관 공표·과태료 부과 가능)

3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
보급 대체이행 제도 도입

대체이행 수단

법 제12조의 17 신설

현
행

공급의무자는 자체건설, REC 외부 구매(자체계약, 입찰, 현물시장)로 이행

개정안

계약시장제도(입찰) 참여를 통한 보급 이행(직접·지분투자)이 원칙(대통령령 위임),
목표 미달 예상시 보완·제한적으로 대체이행* 인정(英 제도 참조)

❖ 직접투자가 곤란한 경우에 한정해 투자금 납부(대체 상한 有)

3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
발전정보 인증 등

법 제12조의 20 신설

현
행

가중치 부여를 통해 발급, 전원간 경제성 보완, 유가증권 성격

개정안

발전정보 인증서로 명칭을 변경*하고, 단순 발전정보 제공,
정책 지원(RE100 이행, 지자체 재생e 사업 증빙) 등 역할

❖ [REC] 발전정보, 유효기간(3년) 內 거래 가능 → [발전정보 인증서] 발전정보, 거래불가

3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
REC 폐지 및 현물시장 종료(유예기간 부여)

현물 시장

법 제12조의5 개정 및 부칙(경과규정) 신설

현
행

REC는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 가능토록 규정

부칙을 통해 기존 규정을 일몰하여 신규 REC 발급 제한('27~)

개정안

2027년 법 시행시에도 소규모 사업제의 제도개편 적응 등을 위해
기존 사업자* REC 발급 거래(현물시장 종료)에 대해 유예기간 부여(~2029년)

①기존 설치된 재생e 설비 보유자, ②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인정 요건 충족시

3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
현물 시장

법 제12조의 5 개정 및 부칙(경과규정) 신설

해당연도 의무량 고정 → 기존 설비 RPS 의무이행(계약) 지속

- ❖ 재생e 발전사업자 보호를 위해 공급의무자의 계약해지를 방지(영국식 전환 모델), 단, 계약 만료 또는 발전사업자 파산 등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의무량 감경·조정

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물시장 설비의 PPA 및 장기계약 전환 유도

Contents

- I. 보급제도 개편 필요성
- II. 보급제도 개편 세부방향(안)
- III. 재생에너지법 개정 방향
- IV. 향후 계획



4. 향후 계획

법 개정(~ 2026.上)

1. 개정 법안 공론화
2. 개정 법안 통과
3. 하위법령 및 고시 마련

세부 개편방안(~2026.下)

1. 개편 세부방안 마련
2. 개편 세부방안 발표
3. 관련 시스템 구축 등

계약시장제도제도 시행(2027~)

1. 원별 입찰계획 수립
2. 계약시장제도(입찰) 실시
3. 현물 전환시장 운영

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(제12조의19)에 따른 계약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 예정이며, 계속해서 정부 및 국회 등과 함께 법 개정·제도 설계 등 지원

기 대 효 과

1. 보급 확대를 통한 규모 경제 달성 : 비용 하락과 공공성 강화
2. 국내 태양광 모듈 및 풍력 터빈 생산량 확대 : 국내 산업 육성 기여
3. 주민 소득 증대와 수용성 확보 : 햇빛·바람소득마을 확산

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방안 및 개정 방향(안)

감사합니다.

